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김형신 소유물건
평가서번호	가온 2506-03-4080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형욱
의뢰번호	2025타경2357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가온감정평가법인

경기북부지사

TEL:(031) 879-6600 FAX:(031) 879-6085





감정평가 심사인증서

감정평가서번호	가온2506-03-4080	인증번호	가온250626-13호
심사요청본지사	경기북부지사	담당감정평가사	김성태
제출처	의정부지방법원		
물건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마전동 441외		
감정평가액	一 金 壹 拾 參 億 壹 仟 參 拾 壹 萬 六 仟 圓 整 (₩1,310,31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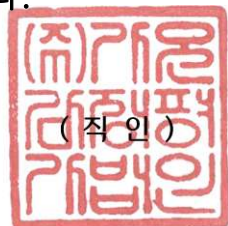
상기 감정평가서는 우리법인의 심사운영규정에 따라 본사 감정평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감정평가심사위원회



상기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 심사업무가 제반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되었기에 심사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주)가온감정평가법인



제 출 문

□ 본인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진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신의를 좇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본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감정평가 관련 법령상 규정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본인은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고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거나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았습니다.

□ 본인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의뢰인과 관련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본인은 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 보수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감정평가 의뢰의 대가로 금품·향응 및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주)가온감정평가법인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성태





[주]가온감정평가법인 경기북부지사 지사장 임경진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일십삼억일천삼십일만육천원정 (₩1,310,316,000.-)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형욱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의정부지방법원 경매5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형신 (2025타경2357)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6.25	2025.06.25	2025.06.26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m) 또는 수량	종류	면적(m)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2,583	토지	2,583	-	1,310,316,000
			이하	여백		
	합계					₩1,310,316,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페이지 :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기도 양주시 마전동	441	답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1,617	1,617	520,000	840,840,000	제시외건물 감안 단가 @468,000 원/㎡
2	동 소	441-10	답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966	966	486,000	469,476,000	
합 계							₩	1,310,316,00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마전동 소재 '삼밭골 교차로'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인근에 왕복 4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등이 소재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 및 근거리에 전철역 등이 소재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대부분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 등이 소재함.

기호(2):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대부분 목답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동측으로 왕복 4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2):서측으로 왕복 4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자연녹지지역, 대로3류(폭 25m~30m)(저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젓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환경부 고시[제2009-264호(2009.11.26)]사항으로 관련사항은 환경부에 문의바랍니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1) 토지 일부 지상에 농막 등으로 이용 추정되는 제시외건물 ㄱ, ㄴ) 등이 소재하나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실내 구조 등은 미확인 상태인 바, 경매 진행시 확인을 요함.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마전동 소재 <삼밭골 교차로>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경매5계의 법원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건임.

2. 대상물건개요

2.1 토지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이하동일))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2025년 개별지가(원/m ²)
1	마전동 441	답	1,617	전	개발제한 자연녹지	중로한면	부정형 평지	223,200
2	마전동 441-10	답	966	목답	개발제한 자연녹지	중로한면	부정형 평지	223,2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실지조사 및 기준시점

3.1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기본적사항의 확정)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5.06.25일로 하였음.

3.2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2025.06.25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4. 기준가치

4.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4.2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이 정당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감정평가조건

5.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이 원칙이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음.

5.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6. 감정평가방법

6.1 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및 감정평가제 이론에 의거 감정평가하였음.

6.2 개별물건별 감정평가 원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대상물건(토지)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되, 거래사례, 감정평가전례 등으로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1.1 토지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감정평가한 시산가액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중 감정평가목적, 대상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비교법(비교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간 합리성을 검토하여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본건 토지는 택지개발 등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가 아니므로 조성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원가법(원가방식)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토지가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추정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바 수익환원법(수익방식)에 의한 감정평가는 제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기타사항

- 임대관계

미상임.

- 물적동일성 여부 등

본건은 토지로서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등) 및 현장조사를 통해 물적동일성이 인정됨을 확인하였으며, 입지여건,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수요, 환가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의 사항

① 기호(1,2) 토지중 일부는 도시계획시설 대로3류 저촉인 바, 그 부분이 전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②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1) 토지중 일부 지상에 농막 등으로 이용 추정되는 제시외건물(ㄱ,ㄴ) 등이 소재하나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실내 구조 등은 미확인 상태인 바 경매 진행시 확인을 요하며, 제시외건물(ㄱ,ㄴ)이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단가는 토지명세표 비교란에 부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2.1 비교표준지 선정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25년 공시지가(원/m ²)
A	마전동 413-1	답	1,433	전	개발제한	중로한면	사다리 평지	283,80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를 선정함.

2.2 시점수정치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 지가변동률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서 당해지역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를 적정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였음. (미고시기간은 전월연장적용)

(경기도 양주시 녹지지역)

기간	지가변동률	비고
2025.01.01.~2025.05.31	0.520	2025년 05월까지 누계
2025.05.01.~2025.05.31	0.108	2025년 05월분
2025.01.01.~2025.06.25	1.00608 (0.608%)	$(1 + 0.00520) * (1 + 0.00108 * 25/31) \approx 1.0060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3 지역요인비교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바,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2.4 개별요인비교

조건	항목
가로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농로의 상태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관개 배수,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고저, 접면도로 상태, 토지이용상황, 토양오염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기호	비교 표준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1	A	1.00	1.01	1.00	0.93	0.97	1.00	0.911
2	A	1.00	1.01	1.00	0.87	0.97	1.00	0.852

기호(1,2) 토지는 비교표준지(A)와 비교하여, 접근조건중 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하고, 획지조건중 규모, 형상, 행정적조건중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등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5 그 밖의 요인 보정

2.5.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판례 2003다 38207판결 (2004.05.14.선고), 2002두 5054(2003.0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근의 감정평가전례,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 등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감정평가전례(거래사례기준) : 감정평가전례(거래사례) X 지가변동률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비교표준지가액

시점수정한 비교표준지 가액 : 표준지공시지가 X 지가변동률

2.5.2 감정평가전례

(자료출처: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상황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감정평가 목적	기준시점
#1	마전동 000-0	전	2,717	전	개발제한 자연녹지	269,000	담보	2023.10.13
#2	만송동 000	전	3,153	전	개발제한 자연녹지	327,000	담보	2023.10.20
#3	남방동 000	답	430	전	개발제한 자연녹지	430,000	담보	2023.05.31
#4	마전동 000외	답	2,583	전	개발제한 자연녹지	477,000	담보	2024.03.2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5.3 거래사례 등

가.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용도지역	토지 거래가격 (원)	토지 단가 (원/㎡)	거래시점
#1	광사동 000-0	전	675.2	전	개발제한 자연녹지	226,627,430	335,000	2022.10.28

토지만의 거래 사례임

2.5.4 거래사례 선정 및 이유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 내 소재하는 감정평가전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1>을 선정하였음.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용도지역	토지 거래가격 (원)	토지 단가 (원/㎡)	거래시점
#1	광사동 000-0	전	675.2	전	개발제한 자연녹지	226,627,430	335,000	2022.10.2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5.5 격차율 산정

기호	사례토지단가 (원/㎡)	시점수정	사정보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1	335,000	1.01929	1.00	1.000	1.683	574,680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A	283,800	1.00608	-	-	285,525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격차율 산정		574,680 / 285,525				2.01	
시점수정치	경기도 양주시 녹지지역 (2022.10.28 ~ 2025.06.25.):1.01929						
지역요인 비교치	거래사례#1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1.000)						
개별요인 비교치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비교표준지A/ 감정평가전례#1	1.30	1.07	1.10	1.10	1.00	1.00	1.683

비교표준지A는 거래사례#1과 비교하여, 가로조건중 접근도로의 상태, 농로의 상태, 접근조건중 교통의 편의성, 환경조건중 자연환경, 획지조건중 형상 등에서 우세함

2.5.6 인근지역 시세 수준

구분	시세수준(원/㎡)	비고
본건 인근 본건과 유사한 조건의 토지	450,000 ~ 550,000원/㎡ 내외	-

2.5.7 경매통계분석

(자료출처:인포케어)

구분	용도	양주시		마전동	
		낙찰가율(%)	낙찰건수	낙찰가율(%)	낙찰건수
최근 1년간 평균	토지/답	58.40	14	0	0
최근 6개월간 평균	토지/답	60.05	9	0	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5.8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비교표준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비교표준지A	2.00

2.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결정단가

기호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283,800	1.00608	1.000	0.911	2.00	520,227	520,000
2	283,800	1.00608	1.000	0.852	2.00	486,535	486,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3.1 거래사례 선정

3.1.1 선정기준

토지만의 거래사례이거나 토지만의 거래가액이 분리가능한 정상적인 거래사례로서 인근지역 내의 거래사례중 용도지역, 실제이용상황, 공법상 제한,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거래사례를 선정함.

가.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용도지역	토지 거래가격 (원)	토지 단가 (원/㎡)	거래시점
#1	광사동 000-0	답	293	전	개발제한 자연녹지	83,760,000	285,000	2024.08.06

토지만의 거래 사례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1.2 비교 거래사례 선정 및 이유

인근지역 내 소재하는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1>을 선정하였음.

3.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 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

3.3 시점수정

(경기도 양주시 녹지지역)

기간	지가변동률	비고
24.08.06 ~ 25.06.25	$\begin{aligned} & (1 + 0.00044 * 26/31) * (1 + 0.00066) * (1 + \\ & 0.00067) * (1 + 0.00049) * (1 + 0.00057) * (\\ & 1 + 0.00520) * (1 + 0.00108 * 25/31) \\ & \approx 1.00885 \end{aligned}$	-

3.4 지역요인비교

대상토지와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바,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5 개별요인비교

조건	항목
가로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농로의 상태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관개 배수,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고저, 접면도로 상태, 토지이용상황, 토양오염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기호	거래사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1	#1	1.50	1.07	1.15	1.05	0.97	1.00	1.880
2	#1	1.50	1.07	1.15	1.00	0.97	1.00	1.790

기호(1) 토지는 거래사례#1과 비교하여, 가로조건중 접근도로의 상태, 농로의 상태, 접근조건중 교통의 편의성, 환경조건중 자연환경, 재해의 위험성 등에서 우세하고, 획지조건중 규모 등에서는 열세하나 형상, 접면도로 상태 등에서 우세하여 전반적인 획지조건은 우세하고, 행정적조건중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등에서 열세함
 기호(2) 토지는 거래사례#1과 비교하여, 가로조건중 접근도로의 상태, 농로의 상태, 접근조건중 교통의 편의성, 환경조건중 자연환경, 재해의 위험성 등에서 우세하고, 획지조건중 규모, 형상 등에서는 열세하나 접면도로 상태 등에서 우세하여 전반적인 획지조건은 대등하고, 행정적조건중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등에서 열세함

3.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결정단가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285,000	1.000	1.00885	1.000	1.880	540,541	540,000
2	285,000	1.000	1.00885	1.000	1.790	514,664	514,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토지 시산가액 검토 및 결정

4.1 토지 시산가액

기호	면적 (㎡)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단가 (원/㎡)	시산가액(원)	단가 (원/㎡)	시산가액(원)
1	1,617	520,000	840,840,000	540,000	873,180,000
2	966	486,000	469,476,000	514,000	496,524,000

4.2 토지 시산가액검토 및 결정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기호	면적 (㎡)	적용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고
1	1,617	520,000	840,840,000	-
2	966	486,000	469,476,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구분	기호	면적(m ²)	적용단가 (원/m ²)	감정평가액 (원)	비고
토지	1	1,617	520,000	840,840,000	-
	2	966	486,000	469,476,000	-
합계				1,310,316,000	-

2.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상기 감정평가전례와 거래사례가격, 가격수준, 다른방식에 의한 시산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제반 법령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마전동 441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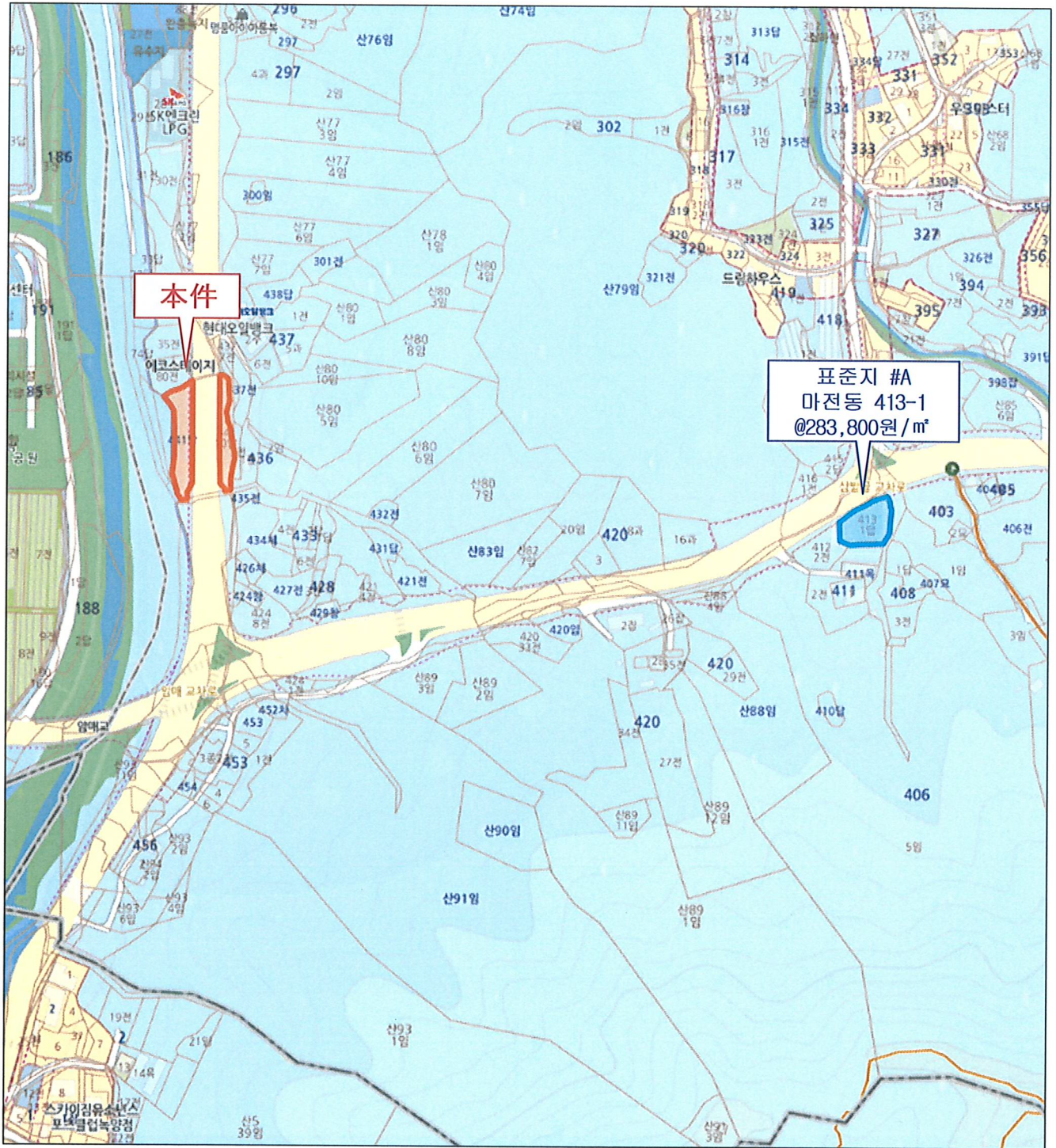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N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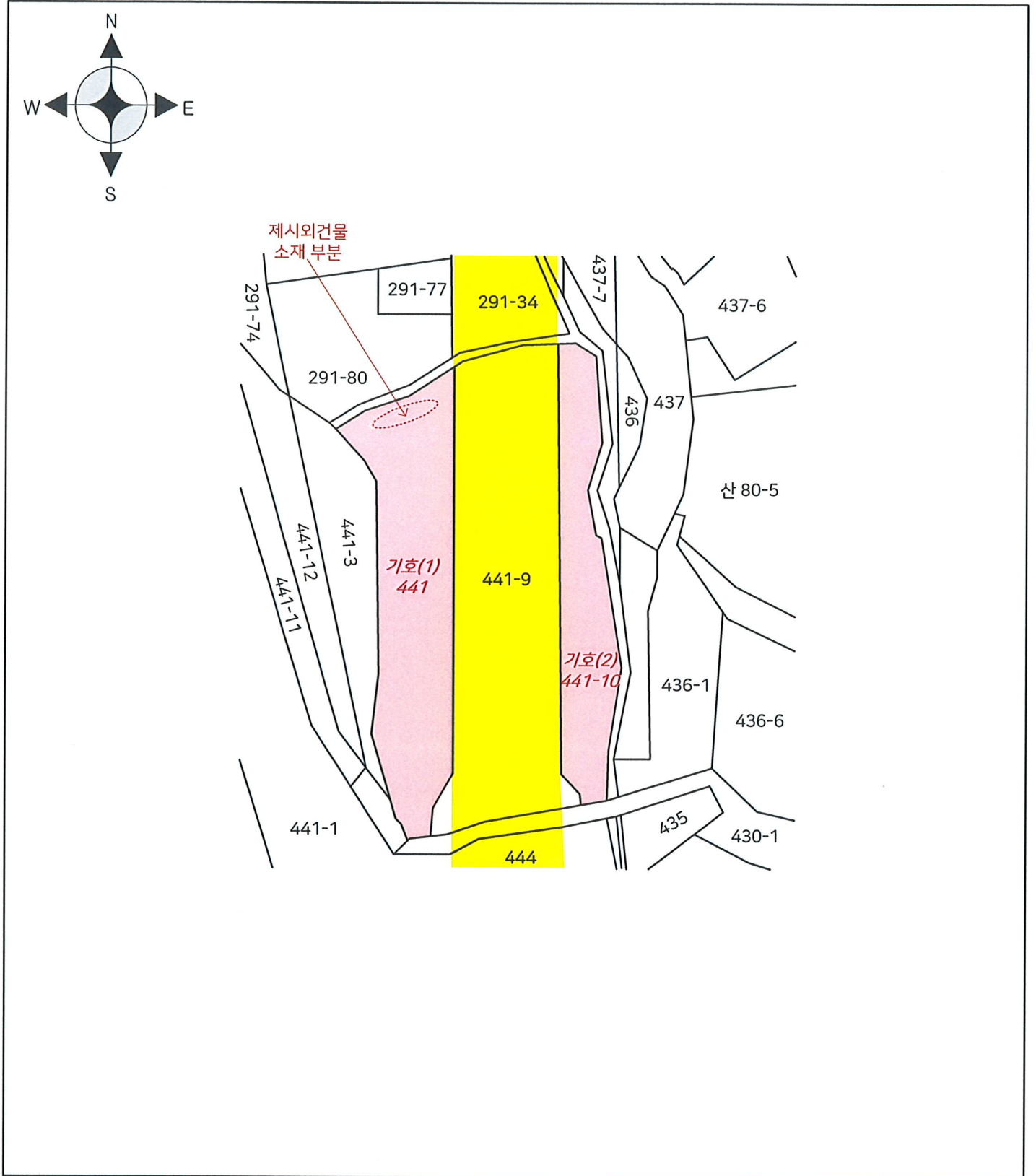
소 재 지

경기도 양주시 마전동 441외



지적개황도

S = 1 : 1,200



사 진 용 지



기호(1) 전경



기호(1) 전경



기호(1) 전경



기호(1) 전경

사 진 용 지



기호(2) 전경



기호(2)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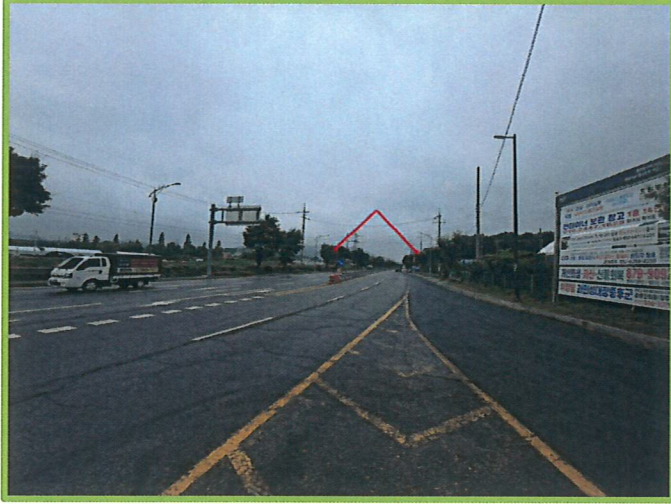


기호(2)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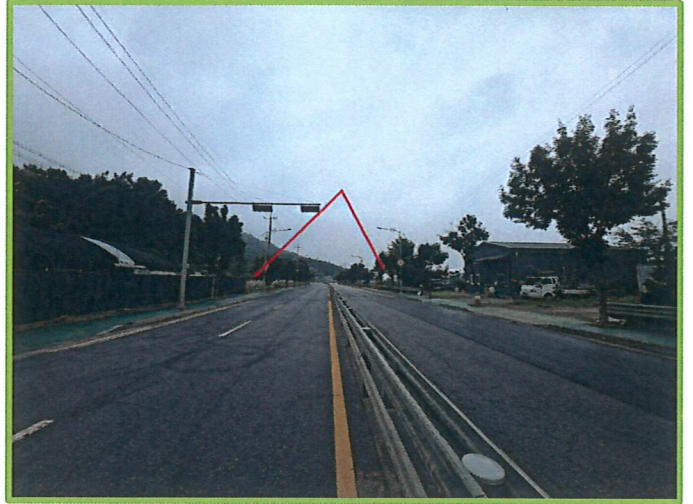


기호(2) 전경

사 진 용 지



주위 전경



주위 전경



제시외건물ㄱ)



제시외건물ㄴ)